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2-2호

발행일: 2022. 4. 15. (금)

제393회/제394회 국회(임시회, 2022. 1. 27. ~ 2022. 2. 25. / 2022. 3. 7. ~ 2022. 4. 5.)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가. 안심사회 구현

나. 자치분권

다. 동물보호복지제도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의 출처는 링크된 원문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1. 개관

제393회 국회(임시회)는 2022년 1월 27일부터 2월 25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으며, 회기 중 3차례에 걸친 본회의가 있었으나, 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만 2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2년 3월 7일부터 4월 5일까지 30일간 진행된 제394회 국회(임시회)에서는 4월 5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10건의 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제393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은 (1)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 청년추천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기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제394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강화를 도모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 현지 적합성 있는 다양한 공익활동 활성화를 통해 입법 목적인 건전한 민간단체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393회 국회(임시회)의 2022년 2월 14일 본회의와 제394회 국회(임시회)의 2022년 4월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12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행정안전위원회(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6	행정안전위원회(9)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의원 등 10인
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 의원 등 10인
10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1)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11	정치개혁 특별위원회(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안심사회 구현, 자치분권, 동물보호복지제도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가. 안심사회 구현

개요

정부는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소방대상물 관리인의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의 제정 등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적 변화가 엿보입니다.

2022년 4월 5일 본회의에서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들 법률은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 등을 위한 입법입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행정안전위원회	<p>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현행법에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또한,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운행 경로, 운전자의 행동 등을 데이터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자동차 출동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저장·통합·분석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인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p> <p>[주요내용]</p> <p>가.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56조제1항제2호 신설).</p> <p>나. 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저장·통합·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p>	2022-04-05 (원안가결)
2	행정안전위원회	<p>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p> <p>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야간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2021년 10월 기준 전국 약 10만 442명, 4,225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p>	2022-04-05 (원안가결)

정책 동향

<p>[100대 국정과제]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행안부)</p>	<p>[100대 국정과제]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행안부)</p>
<p>과제목표 교통사고, 승강기 사고,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 강화 추진</p> <p>주요 내용 (안전복지) 국민안전권 실현을 위한 「(가칭) 안전 기본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까지 안전취약계층 지원 법적근거 마련 및 취약계층 안전서비스 확대 <p>(교통 안전)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 구축, 보행자 우선 및 교통약자 보호, 취약계층 배려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에 스마트 철도안전 기본계획 수립, '22년까지 항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철도와 항공기 안전 강화 <p>(안전위험요소 제거) 승강기·건설·지하안전 등 부문별 위험요소 제거, IoT를 활용한 위험 예측, 감지, 분석, 대응기술 개발</p> <p>(지진 안전)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내진설계·보강, 활성단층 조사 실시, 지진 대비 교육·훈련 확대 등 '20년까지 선진국 수준 지진 대응체계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까지 지진 조기경보시간 7초~25초로 단축('16년 50초) <p>(화재 안전) 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대응체계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특별조사 인력·대상 확대 및 위험특성별 맞춤형 안전대책 강화 <p>(스마트 기상정보) '17년부터 전문예보관 양성, 수치예보기술 개발('19년) 및 '21년까지 한국형 날씨 예측모델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p>	<p>과제목표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과 소방·해경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통합적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p> <p>재난에 대한 사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사후 조사·치료 강화</p> <p>주요 내용 (통합적 재난관리) 국가위기관리센터 역할 강화, 자치단체·경찰·소방·해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p> <p>(소방) '17년에 소방청 독립 및 소방인력과 장비 확충, 119구급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현장 중심 육상재난 대비·대응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단축 및 국가직화 검토,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등 처우 개선과 치료 지원 확대 <p>(해경) '17년에 해경청 독립 및 수사·정보기능 정상화를 통한 해경의 역할 재정립, 불법 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통한 해양영토주권 수호</p> <p>(재난 예·경보)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 전면 개선, '21년까지 재난 안전통신망 구축, 지진해일 분석·예측·정보전달 체계 고도화</p> <p>(재난조사·치료) '22년에 독립적인 재난사고 조사위원회 설립, '20년까지 대국민 재난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총괄 지원체계 구축</p>
<p>▼</p> <p>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행안부)</p>	

추진 배경

(신종재난 등장) 기후변화, 신종감염병 출현 등 재난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비 역량 강화 필요

(안전수요 증대) 어린이·보행자 등 취약계층 대상 안전사고 빈발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 증가

추진현황 및 성과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각종 위험요인 조기 진단·정비

- IoT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부처 사업을 통합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

*'20년부터 3년간 170개소, 총 510개소 설치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펌프장(행안부), 하수도(환경부), 하천(국토부)을 함께 정비

- 위험·핵심시설을 중심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범정부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 확대*

*학교, 전통시장, 소방 등 25개 타 부처 소관 안전정보도 연계하여 공개

(현장 중심의 신속한 재난대응)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상황관리

- 풍수해 대비 겨울철(11. 15. ~ 3. 15.), 여름철(5. 15. ~ 10. 15.) 특별대책기간 운영, 재해우려지역 전면 재조사, 시설통제* 및 사전 주민대피 적극 실시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21~'22년, 173개소),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20~'21년, 67개소)

- 경찰·소방·지자체 등 재난관련기관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전국단일 통신망* 구축 완료 ('21.3월/「재난안전통신망법」제정)

* (前) 지역별 통신망으로 근거리 통신 → (後) 전국망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통합적 지휘 가능

(실질적 복구 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의 피해 지원체계 구축

- 공공임대 주거 지원, 가전제품 무상수리 등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간접지원 항목 발굴·확대* (15→30개, '21.6월)

* 일반재난지역(9→18개) 및 특별재난지역(6→12개) 전파사용료 감면, 과태료 유예 등 항목 추가

- 풍수해보험 지원율을 상향*하고, 피해위험이 높은 지역의 집중가입을 유도**하는 등 보험 활성화 추진

* 주택·온실(52.5→70%), 소상공인(59→70%)

** 재해위험지구 내 주택 우선 가입 등 집중 홍보

관련 : 정부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관계부처 합동 2021. 11.

참고 자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1. 11.

박완수 의원안: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 및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

서범수 의원안: 국가 등의 책무 규정 개선, 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및 소방공무원 의무 규정의 개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1. 9.

김영배 의원안: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 신고의무자에 '관계인' 명시

엄태영 의원안: 강제처분 손실보상과 소방자동차 파손복구비용에 대한 국가 보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또는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0. 9.

박완주 의원안 등: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필요성과 기본방향 검토 등

[대한민국 재난안전관리](#)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2021. 3. 31.[국민안전권 실현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19. 11. 29.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정 전략의 하나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제안하고 있음. 국정과제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 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통해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안전복지의 필요성을 강조. 국민의 ‘안전권’ 보장은 2018년 3월 개헌 논의 당시, 헌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개념으로, 생명권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보호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헌법에 담아야 할 기본권 설문조사 결과, ‘안전권’이 상위에 랭크되는 등 안전권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개헌이 무산됨에 따라 안전권 법제화와 관련된 논의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어, 법제화를 위한 이슈 검토 및 법체계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법제 정비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16-10 2016. 10. 31.

○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재난안전관리를 구축하고 있음. ○ 그런데 우리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은 정부주도의 재난 대응 체계로 되어 있어,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대응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위험의 초기대응자로서 재난안전관리 체계강화 및 역할의 세분화와 구체화를 필요로 하며, 또한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지역의 수호자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함으로써 안전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능력제고와 국민의 안전강화에 있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포커스」 제131호 2018. 2. 1.

현대인들은 매일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다. 위험은 범죄, 질병, 재난, 테러, 기후변화, 재정, 음주, 흡연과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이와 같이 위험은 매우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일부이며 결국 우리는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에 따르면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므로써 국민 개개인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 임무이자 존재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헌법 제34조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국민안전과 관련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와 향후의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국민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재난안전정책연구 성과확산과 협력방안 모색](#)

한국행정연구원 학술행사/세미나 2018. 11. 30.

세션 1 : 국민 불안 문제 해결을 통한 안전복지의 강화 (좌장: 이규연 국장(JTBC))

세션 II: 기반 시설 안전관리 정책의 과제 (좌장: 안종주 위원 (정책기획위원회))

세션 III: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한 연계·협력 (좌장: 정지범 교수 (UNIST))

나. 자치분권

개요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하면서 지방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인구의 감소에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인구의 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는 전국에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치안·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를 충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문제, 성장동력 창출 등 국가·사회적 현안을 지방과 수도권이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전략이 자치분권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여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화하고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전면적·실질적 이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5일 본회의에서는 주민투표제의 민주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된 권한과 사무 등을 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행정안전위원회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	2022-04-05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2		<p>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등록 말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려는 것임.</p>	2022-04-05 (원안가결)
3	행정안전위원회	<p>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자치분권위원회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 6건을 이양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된 명칭인 특례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p> <p>[주요내용]</p> <p>가. ‘100만 이상 대도시’의 명칭을 ‘특례시’로 변경(안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42조 제1항·제3항 및 제43조 제3항) ‘100만 이상 대도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특례시’로 변경함.</p> <p>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추가 이양하는 6건의 사무특례를 규정(안 제41조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p> <p>「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항만법」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과 관련된 사무특례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로 추가하여 규정</p> <p>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계법률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확대된 사무특례 삭제(안 제41조 제4호 및 제5호 삭제)</p> <p>「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은 해당 법률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까지 특례가 확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특례 규정에서는 삭제함.</p>	2022-04-05 (원안가결)

정책 동향

[100대 국정과제]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행안부)

과제목표

중앙-지방 간 정례 협의체 신설,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 활성화

주요 내용

(자치분권 기반 확보) '21년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화, 대통령 개헌안의 취지를 반영한 자치분권 관계법령 제·개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기반 조성

- 4대 자치권 보장,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량·책임성 제고

(국가가능 지방이양) '18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을 단계별로 제정하여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 추진

- 파급 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이양사무 발굴과 사무배분 사전협의제 도입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20년까지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조례개폐청구 요건 세부화 등을 추진하여 주민 직접참여제도 확대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 행·재정 정보공개 확대

(마을자치 활성화) '21년까지 주민자치회 제도개선안 마련 및 법률 개정, '17년에 주민중심 행정복지 서비스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 주민 주도의 실질적 마을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지위 강화, 읍면동을 주민자치의 실현공간이자 서비스 제공의 핵심 플랫폼화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 9. 11. 발표)

비전

자치분권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자 성장동력이다. 자치분권의 3가지 비전은 ①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②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③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다.

6대 추진전략

①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해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을 도입한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현안과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높인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②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지방 간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합리적 권한 배분을 위해 중앙과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기준을 마련한다. 중앙의 권한은 기능중심으로 자치단체에 이양한다. 자치권 침해를 막기 위해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질 높은 민생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학교로 단계적으로 이양한다.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 9. 11. 발표)

③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의 8:2에서 7:3으로, 장기적으로는 6:4까지 개편한다. 지방세입 확충 기반을 강화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고 국고보조사업을 개편한다.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의 형평 기능을 높인다.

④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소통과 협력이 정립될 수 있도록 협력기구를 구성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분권 모델을 강화한다.

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주민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인다.

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시대변화에 맞는 자치단체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선거구제,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교육감 선거제도 등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국회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자치분권 전략 및 과제

6대전략 33개 과제

추진전략	과제명
1 주민주권 구현	① 주민 참여권 보장 ② 속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③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④ 조례 제·개정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⑤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⑥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⑦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①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②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③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④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⑤ 대도시 특례 확대 ⑥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⑦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①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②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③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④ 국고보조사업 개편 ⑤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⑥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①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 ②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③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②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③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④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⑤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⑥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⑦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⑧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②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관련: [자치분권](#)

참고 자료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0. 9.

백혜련 의원안: 주민투표권의 연령기준을 18세로 조정

오영훈 의원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실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2. 1.

서준일 의원안 등: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1. 11.

백혜련 의원안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 특례 부여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8. 9. 11.

[2019년도 자치분권 시행계획](#)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9. 2. 22.

[자치분권 로드맵 비전과 전략](#)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

[자치분권 2.0 포용한국으로](#)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포커스」 2021. 3. 8.

지방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희망찬 자치분권 2.0 시대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지방행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핵심 내용 및 의의 (문병기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미래와 향후 과제 (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주민주권의 구현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의의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정립을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 9. 24.

이 연구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관련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사무이양에 따른 지방재정의 확대방안과 그에 따른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립 및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이에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배분과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의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파악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사무 배분의 원칙을 검토하고자 함.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자치분권 시행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자치분권에 따른 중앙과 자치단체 간의 사무 재배분 및 재정확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따라서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사무의 구분과 배분의 과정을 검토하고자 함. 또한 인구변화에 따른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확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자치분권 로드맵」의 내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8. 1. 29.

2017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는 현 정부 5년간 지방분권을 추진하는데 지침이 되는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동 로드맵을 주제로 4차에 걸쳐 권역별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향후 자치분권 로드맵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동 계획안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토론회 2019. 7. 25.

자치분권과 풀뿌리주민자치 (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 소장 김필두)

지방의회와 풀뿌리주민자치 (안동시의원 이재갑)

지방자치단체와 풀뿌리주민자치 (당진시장 김홍장)

주민자치회와 풀뿌리주민자치 (한국자치학회 이사 김석구)

[자치분권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 2018. 4. 13.

◇ 주 제: 자치분권 현황과 과제

◇ 발 표: 윤태범 원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 동물보호복지제도

개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 및 동물과 사람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동물보호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지속과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과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원발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2년 4월 5일 본회의에서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맹견안전사고 방지, 동물 유기 문제 방지, 체계적이고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 등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보호법」은 1991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 및 동물과 사람 간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선·보완되어 왔으나,	2022-04-05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p>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지속과 반려 가구의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지속과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하며,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등 윤리위원회 기능을 보완함과 아울러,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등 동물보호·복지 제도의 개선과 고도화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p>	2022-04-05 (원안가결)

정책 동향

[100대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농식품부)

과제목표

환경 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농식품산업 확산 및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업회의소 등 협치·참여 행정 확산

주요 내용

(영농창업 활성화) '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정착지원 강화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 '18년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22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천호 조성 추진

(스마트 농업) '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에 7천ha, 축산 5천호 보급 및 관련 R&D 투자 확대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 '18년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GAP 및 HACCP 인증농가 확대 등
- '20년 기능성식품산업육성법 제정 등 기능성식품, 발효식품 육성

(참여와 협력의 농수산 행정)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및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지방분권형 농정 추진

동물복지 종합계획('20년 ~ '24년)

비전

동물보호·복지 제도 고도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내면화

추진목표

-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 제고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화
- 유기동물 감소 및 재입양 활성화
-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서 농장동물 복지 제고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로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추진과제

-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 ① 동물보호·복지 의무교육 확대
 - ② 개 물림사고 예방체계 구축
 - ③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 ④ 동물등록제 개선 및 활성화
-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① 반려동물 생산·유통 환경 개선
 - ② 불법 영업 근절
 - ③ 반려동물 이력 관리 강화
 - ④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품질 개선
-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 ① 사설보호소 관리제도 마련
 - ②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인력 기준 개선
 - ③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 ④ 재난 발생 대응 역량 강화
-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 ①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개선
 - ② 운송·도살 단계 동물복지 기준 구체화
 - ③ 축산농가 동물복지 의무교육 확대 및 점검 강화
 - ④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 ⑤ 말·축제 이용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및 감독 기능 강화
 - ②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처벌강화
 - ③ 사역동물 실험 관리 개선
 - ④ 윤리적 동물실험 정보 보급 체계 구축
-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 ① 동물복지위원회 정책 심의 기능 강화
 - ② 동물보호·복지 R&D 기획단 운영
 - ③ 동물보호·복지 통계·실태조사 개선
 - ④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동력 개선
 - ⑤ 동물보호·복지 전문기관 구축

관련: [동물복지종합계획](#)

동물보호 복지대책 추진

주요정책 대상

국민, 동물소유자, 동물실험관계자, 동물생산·판매 등 영업자 등

정책추진 배경

-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반려동물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올바른 반려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
- 반려동물 및 보유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 육성 요구 증가
-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인해 밀식사육 등 축산 사육환경 개선 필요성 제기

주요 추진 내용

✓ 제도 개선

- 반려견 목줄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21. 2. 12.) 및 시행('22. 2. 11.)
-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 신설 등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마련·시행('19. 3. 21.)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가입 관련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시행('21. 2. 12.)
- 등록대상동물을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확대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시행('20. 3. 11.)
- 고양이 소유자 중 등록을 원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실시('18~)
-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등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마련·시행('18. 3. 22.)
- 동물생산업 신고제에서 허가제 전환('17. 3. 21.) 및 동물 신규서비스업 등록시행('18. 3. 22.)
* 동물 신규서비스업: 동물 전시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 운송업
-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1. 2. 12.)

✓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 개념 확산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대상 축종 확대

✓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합계	-	400	400	400
동물복지축산인증 컨설팅	-	400	200	200
동물복지축산인증 생산품 판로 지원	-	-	200	200

✓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추진

✓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및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등 추진

✓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22~)을 통한 보호관리 수준 개선 및 동물보호·복지 실현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합계	4,109	4,566	5,277	11,020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1,813	1,814	2,225	2,111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756	432	662	749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400	400	650	840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1,140	1,140	1,140	3,420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	-	780	600	600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	-	-	1,500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보조)	-	-	-	720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용자)	-	-	-	1,080

✓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2,280	4,644	3,526	4,693

관련: [동물보호 복지대책 추진](#)

참고 자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검토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안: 무등록·무허가 등의 영업에 대한 벌칙 강화 등

맹성규 의원안 등: 학대행위자의 수강명령·이수명령 병과 규정 신설 등

권명호 의원안: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명확화

박근홍 의원안: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 변경심의 제도화 및 동물실험 심의 후 감독 권한 추가 등

이태규 의원안: 맹견에 대한 복종훈련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이원욱 의원안 등: 맹견 소유·사육 허가제도 및 벌칙 신설

이상헌 의원안: 실험동물 관리를 위한 전임수의사 배치 및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의무 부과 등

정청래 의원안: 반려동물 영업의 허가·등록·신고에 따른 번호, 업체명 등 정보공개 근거 마련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1. 14.

[반려동물보험 현황 및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쟁점」 2019. 5. 2.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2017년 기준 전체가구의 28.1%에 달하는 593만가구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규모 역시 2015년 약 1조 8천억원에서 2020년에는 약 3조 3천억원 수준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진료비의 경우 동물병원별 진료비 격차가 크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등 불투명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반려동물보험이 이러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유기동물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최근 국내 반려동물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 등을 통해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향후과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국내 동물보호시설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쟁점」 2019. 3. 16.

최근 국내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구조한 동물의 상당수를 안락사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안락사 문제가 불거진 동물보호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가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곳이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동물보호시설로서 안락사 기준, 동물 보호 조치 및 분양 기준 등 동물 관리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욱이 정부는 국내 사설동물보호 시설의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유기동물 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의 수용 규모를 확대하고, 사설동물보호시설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내 동물보호시설의 현황,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개의 공격성평가 방법 및 관리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20. 2. 5.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인구는 증가 추세임. 2018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진행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비율은 23.7%이며,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의 비중은 18%로 전체 반려동물 양육가구 중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개물림 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여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로 인한 119구급대의 병원 이송 환자수는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조사됨. …… 동물복지에 있어 보다 선진적인 국가들의 경우, 개가 어릴 때부터 사회화를 위한 교육을 시작하고, 과도한 공격성을 보이는 개는 번식시키지 않는 등 동물이 탄생부터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한국보다 앞서 잘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공격성 등 반려견의 행동 평가 관련제도에 대한 연구 역시 선진적인 문화 전반을 함께 이해하는 맥락에서 이루지는 것이 바람직함. 동물복지 선진국의 개물림 사고 대응 절차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 영국의 경우 반려인이 미리 가입해 둔 보험으로 상대의 부상 치료비용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상이 심할 경우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하고, 이후 재판을 통해 징역형(물림사고로 사람이 사망 시 최대 징역 14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등 개의 행동에 대한 반려인의 책임을 점점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 해외 사례 및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개물림 사고 관련 위험 평가와 그를 통한 안전관리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함. 위험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견을 선정하고, 개의 행동 및 사육환경을 토대로 개물림 사고 발생 위험을 예측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반려인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안 개발이 필요함.

동물보호·복지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7. 12.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는 등 정책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 조직·체계로는 대응이 곤란함. 동물보호·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홍보, 영업자 관리·단속, 동물 보호 기반 구축 등 정책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나 관련 조직이 부족한 실정임. 관련 전담 조직 및 인력 부족으로 지자체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영업자 신고등록 수준의 단순한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선제적 정책대응에 어려움이 많음.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 동물보호·복지 행정조직 체계 진단과 선진사례 분석 및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효과적인 정책 운영을 위해 국내 동물보호 복지 조직을 진단하고, 해외선진국의 제도·조직·행정체계를 분석하여 국내 동물보호·복지 조직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 10.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리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들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의 보호, 관리,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여 반려동물과 관련한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제도 등 정책을 검토한 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과제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반려동물 관리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국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미국, 영국, 독일 등 외국의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정책을 검토하여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에 있어서 사회적 이슈와 사례를 입양, 양육, 사후의 생애주기별로 정리하고 단계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017-08」 2017. 11. 24.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가족구성원 수의 감소와 1인가구의 증가는 반려동물 보유에 대한 관심과 확대를 가져왔으며,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도 2015년 현재 전체 가구의 21.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2015년 현재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내지 산업의 시장규모는 1.8조 원이며 2020년에는 약 5.8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양적 성장이 예견되는 반려동물관련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법은 현재 「동물보호법」이 유일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의 영업 관련규정만으로는 관련산업 전반에 대한 법적 규율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소위 “반려동물 소유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과 반려동물관련산업의 확대에 따른 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관련산업 정책에 대한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고자 함.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